■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64호의6서식](2023.03.20 신설)

(앞쪽)

관리번호 -

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계산서

1. 집합투자업자

①법인명	②사업자등록번호

2. 집합투자재산 현황

③투자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 (금융상품 코드)	④사업자등록번호	⑤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

3.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중 환급분(납부금액)의 계산

⑥소득 종류	⑦납부 국가	⑧국외원천 과세대상 소득금액	외국납부			환급금			⑮기준(재정) 환율	⑯납부금액 (⑭×⑮)
			⑨ 연월일	⑩ 세율	⑪ 세액	⑫ 연월일	⑬ 세율	⑭ 세액		
계										

* 집합투자재산별(펀드별)로 작성합니다.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94조의2제6항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에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의 환급금에 대한 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세 무 서 장 귀 하

첨부 서류	외국납부세액 환급금에 관한 입증서류 1부	접수일 인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
작 성 방 법

※ 이 서식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에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은 경우, 해당 환급금의 납부를 위한 서식입니다.

1. ①・②란: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
2. ③・④・⑤란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회사등 또는 투자신탁의 명칭과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 코드 3자리(예: 은행의 적립식목적신탁의 경우 "AIB")를 적고, 해당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을 적습니다.

3. ⑧란: 국외원천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소득발생지국의 현지통화명(예: USD, EUR 등)으로 적습니다.

4. ⑨・⑩・⑪란: 외국납부세액의 납부일자, 원천징수세율 및 납부금액(현지통화 기준)을 각각 적습니다.

5. ⑫・⑬・⑭란: 외국납부세액 환급금의 수령일자, 원천징수세율 및 환급금액(현지통화 기준)을 각각 적습니다.

6. ⑮란: 외국납부세액 환급금의 수령일 기준 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른 기준(재정)환율을 적습니다.

7. ⑯란: 간접투자회사등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금액으로서 외국납부세액 환급금에 기준(재정)환율을 곱하여 계산한 원화환산액을 적습니다.